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년원학교 대상 학교 종류 변경 등〉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970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소년원학교 대상 학교 종류 변경	3
2.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에 관한 지원 요청 근거 마련	9
3. 「초·중등교육법」 특례 중 학교회계 설치·운영 규정 제외	17
4.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 신설	2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6. 20.
3. 회 부 일 : 2025. 6.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사범의 낮은 학업성취도 및 관련 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소년원에서의 학교 교육은 미진한 상황임. 소년원학교에서 전임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그 수가 부족하여 교정직 공무원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타 교과목의 전임교원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의 학업수준이나 보호기간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통합 학급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기도 함.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년원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협업을 타진하고 있으나, 일선 소년원학교가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할 때 해당 사안과 관련된 부서를 직접 파악하여 각각 접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소년원학교 측의 요청사항이 교육부 및 교육청

내에서 공유되지 않아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에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두어 소년원학교의 초·중등교육 여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의안번호 제10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소년원학교 대상 학교 종류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29조제1항은 소년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소년원학교 대상 학교의 종류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 ----- ----- -----제2조제5호에 따 른 각종학교를----- ----- -----.

나. 검토의견

- 소년원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¹⁾까지의 규정에

1)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6. (생 략)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을 육성하고 보호소년의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²⁾

이에 현행법 제29조³⁾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⁴⁾까지의 학교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를 소년원학교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⁵⁾

또한 현행법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소년원학교의 수용기간은 출석일수로 계산되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할 경우 전적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⁶⁾ 소년원학교는 출석·학력 등이 인정되는 학교로서 보호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임무) ①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5) 소년원학교의 초·중등교육은 9호 및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 중 일반학교인 초·중·고등학교 학적을 보유한 소년을 대상으로 함. 강태경·유진,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1., 48.

소년의 육성 및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소년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안양, 춘천, 제주 등 총 10개 소년원이 있고, 이 중 제29조에 따라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는 소년원학교는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대구 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등 총 4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음.

< 소년원학교 설치 현황(2024) >

지역	기 관	개 교	지역	기 관	개 교
서울	고봉중·고등학교	1990	전주	송천중·고등학교	1990
대구	읍내중·고등학교	1990(2021)	안양	정심여자중·고등학교	1990(2019)

주: 괄호 안은 재개교 연도

- 개정안은 소년원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 학교로 분류하여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소년원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 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소년원학교의 설치·운영 취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각종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으로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등을 그와 유사한 학교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⁷⁾

안 제29조제1항과 같이 소년원학교를 각종학교로 규정하여 수업연한,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 교육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게 될 경우,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다른 교육운영으로 인해 원적학교로 복귀 후 교육과정의 연계 및 학습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소년원학교의

7)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생략)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3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교의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에 준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84조(교육과정) 각종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제85조(학생정원 및 학급 수) 각종학교의 학급당 또는 학과당 학생정원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정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입학자격) ①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학교 또는 3년제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설립·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971호)과 함께 의결될 필요가 있음.

다. 관계기관 의견

- 안 제29조제1항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소년원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일반학교에서 각종학교로 전환될 경우, 일반학교의 교육과정과 상이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출원 후 보호소년이 원적학교 학업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재비행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개정안의 내용과 연계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제10971호)의 내용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보호소년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의 우려는 없는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소년원학교를 정규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규율함으로써 오히려 보호소년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임.
- **교육부**는 소년원학교의 형태를 기존의 초·중·고등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제한하여 설립·운영시 오히려 일반 학생과 소년원 학생을 다르게 대우하여 사회적응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에 관한 지원 요청 근거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29조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소년원 학교 소재지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 및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② <u>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하는 각종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소년원학교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 및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현행법 제30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법무부 소속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음.⁹⁾

현재 4개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 담당으로 채용·배치된 직원은 총 17명임. 이 중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되어 있고, 대구소년원의 교원은 전문경력관 1명과 공무원 3명으로 채용되어 있음.

< 소년원학교 교원 현황 >

지역	기 관	교원수	지역	기 관	교원수
서울	고봉중·고등학교	5명 (전문경력관)	전주	송천중·고등학교	4명 (전문경력관)
대구	읍내중·고등학교	4명 (전문경력관 1, 공무원 3)	안양	정심여자중·고등학교	4명 (전문경력관)

-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소년원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3조¹⁰⁾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 대상에

8)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9)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원 등) ①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0)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해당함. 이에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정해진 교육기간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¹¹⁾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 실시는 단순히 대상자의 학업 성취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예방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¹²⁾ 대상 소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소년을 사회화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또한 소년원학교에서의 교과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소년원학교에서 교과교육을 이수하는 소년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 동안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 수료 인원은 2021년 329명에서 2025년 784명으로 2.4배 가량 증가하였음.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교육계획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연령, 학력, 적성, 진로, 교정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처우과정을 정하고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교육계획)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정해진 교육기간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 M.W. Lipsey, J.C. Howell, M.R. Kelly, G. Chapman, and D. Carve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Juvenile Justice Programs, Center for Juvenile Justice Reform at Georgetown University (2010) 참조, 강태경·유진,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13에서 재인용.

＜ 소년원학교 교과교육 수료 인원(2021-2025) ＞

(단위: 명)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료 인원	329	369	417	719	784

- 안 제29조제2항은 소년원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소년원학교 교원의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 및 교육과정 체계화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에 기여하고 소년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소년원학교의 특수성과 가변적인 수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소년원 학교는 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2024년 기준 각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3~5명으로 교과과목별 전담교사가 확보되지 않아 다양한 교과교육을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게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¹³⁾

13) 강태경·유진,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46-47.

안 제29조제2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체계화 및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교과교육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29조제2항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현행법 제30조제4항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 제30조제4항¹⁴⁾은 소년원학교장은 필요 시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제 교육청 소속 교사가 소년원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교사파견 현황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명	0명	0명	5명	4명

이에 안 제29조제2항의 내용 중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 제30조제4항과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문을 정비·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원 등) ④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으로 박준태의원안(2024. 9. 25. 발의, 의안번호 제4265호)과 강득구의원안(2024. 11. 22. 발의, 의안번호 제5790호)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로, 이와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강득구의원안·박준태의원안과의 비교 >

현행	개정안(박희승의원안) (제10970호)	박준태의원안 (제4265호)	강득구의원안 (제5790호)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생략) <u><신설></u>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u>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하는 각 중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소년원학교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 및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u>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u>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u>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원 배치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u><신설></u>	<u>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		<u>③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다.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29조제2항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보호소년 등의 학습권 보장과 소년원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부·교육청에 대한 교사와견 등 지원 명문화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보호소년의 품행교정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 **교육부**는 교원 배치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학교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정원을 확보하고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고, ‘필요한 지원’의 의미가 광범위하므로 이를 ‘교사의 파견’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으며, 후단의 이행의무 규정은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적 파견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관련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육과정 연구·개발”이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년원 학교를 지원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역할을 규정

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관계기관 수정안 간 비교 >

개정안	교육부 수정안	국가교육위 수정안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하는 각종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소년원학교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 및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하는 <u>학교의</u>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소년원학교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u>교사의 파견을</u> 요청할 수 있다. <u><삭 제></u>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하는 각종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의 <u>교육과정 운영</u>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소년원학교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 및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과 같음)

3. 「초·중등교육법」 특례 중 학교회계 설치·운영 규정 제외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29조의2제1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소년원학교에도 학교회계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제29조의2(「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 ----- ----- <u>제18조의2, 제31조</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9조의2는 소년원학교의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 중 일부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소년원학교의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

조문	내용
제4조	학교 설립 기준 및 사립학교 설립 등 교육감의 인가 사항
제10조	수업료 및 납부금 징수
제11조	국민의 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8조	학교의 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 및 그에 대한 재심청구 절차
제18조의2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0조의3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기능
제3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4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실시 근거
제63조	관할청(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 근거
제64조	관할청의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근거
제65조	관할청의 학교 등의 폐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및 제32조에 따라 국립·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 예산안과 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¹⁵⁾

반면 소년원학교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 및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무부 예산을 통해 운영되어 법무부 예산안

15)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생략)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 14. (생략)

및 결산 심사의 대상이 됨.¹⁶⁾

- 이에 안 제29조의2제1항은 소년원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상 ‘각종 학교’로 하고 별도의 학교회계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여 소년원 학교 교육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 안 제29조의2제1항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소년원 학교의 수입 구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의 체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소년원학교의 경우 일반적인 학교와 다른 수입 구조를 지니고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는 학교회계가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수업료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학교발전기금 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등을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년원학교의 경우 수업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이 존재하지 않아 소년원

16) 현재 소년원학교는 법무부 예산 사업 중 ‘소년원생수용’ 사업(1632-300), ‘소년원운영 인건비(총액)’ 사업(7002-105), ‘소년원운영 기본경비’ 사업(7018-258)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학교 수입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나 소년원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을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한다는 점¹⁷⁾에서 학교회계의 설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짐.

또한 동법 제30조의3 및 제32조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안 및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학교회계의 운영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안 제29조의2제1항은 특례 규정 중 학교회계와 관련된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제외하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는 여전히 특례 규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7)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셋째,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971호, 2025. 6. 20. 발의)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0조의4제1항은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학교회계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와 제3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례규정을 개정안 간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다.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29조의2제1항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소년원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학교발전기금, 사용료 등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학교회계 운영에 필수적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려우며, 학교회계 설치 유무에 따라 교과교육소년원과 직업훈련소년원간 처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소년원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학교회계가 설치되면 소년원 전체는 국가회계, 소년원학교는 학교회계로 관리되는 이원적 구조로 인해 예산 편성이나 집행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29조의4는 소년원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에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9조의4(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 등) ①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이하 “교육정책협의회”)를 둔다.</u> <u>② 교육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u> <u>1. 소년원학교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u> <u>2. 소년원학교 교육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이행 관리</u> <u>3. 그 밖에 소년원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교육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u> <u>1. 법무부장관</u>

2. 교육부장관

3. 소년원학교 소재지의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4.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장
관이 임명하는 관계 전문가
3명

④ 교육정책협의회의 공동의장
은 법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한다.

⑤ 교육정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
명을 두며, 법무부 범죄예방정
책국장을 간사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협
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는 소년원학교의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소년원학교의 운영 과정에서 학적관리¹⁸⁾나 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¹⁹⁾ 교육부장관의 권고 이행²⁰⁾ 등 교육부 및 시·도 교육감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협조가 드문 상황으로 나타남.²¹⁾

- 참고로 외국의 경우 관계 부처의 협의나 공동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례가 존재하는데, 미국은 연방 행정부 내 독립된 협의·조정 기구로서 ‘소년사범 및 비행예방을 위한 조정협의회(Coordinating

18) 제31조(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 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19)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0) 제29조의2(「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1) 강태경·유진, 앞의 글, 68.

Council o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를 두어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이 소년사법 정책 전반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책임을 지니고 있음.²²⁾

- 안 제29조의4는 소년원학교 교육정책 수립·추진과 교육정책 추진 상황 점검·이행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신설함으로써 소년원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있어 법무부와 교육부의 공동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년원학교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29조의4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요건과 협의회 운영 방식에 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29조의4의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 설치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설치요건 및 설치절차에 부합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협의 등으로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로 보여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22) 강태경·유진, 앞의 글, 32-35.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어야 하므로,²³⁾ 소년원학교 교육정책협의회의 업무의 내용과 성질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므로,²⁴⁾ 안 제29조의4를 신설하기 이전에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간 협의 및 중복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임.

- 둘째, 안 제29조의4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명시될 사항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23)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4)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위원회 설치 시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존속기한,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²⁵⁾

안 제29조의4는 협의회의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임.²⁶⁾

-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수정사항 및 체계자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안 제29조의4제3항제4호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관계 전문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위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짐.

25)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기피·회피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6)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296.

다. 관계기관의 의견

- 안 제29조의4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행정안전부와의 협의회가 선행되어야 하고, 소년원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협의회 운영보다는 법무부·교육부 간 협업 또는 소년원학교 소재 교육청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에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관계자를 포함하여, 보호소년의 재사회화를 위하여 소년보호사건을 통해 축적된 방안을 행정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기설치되어 운영 중인 ‘법무부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2
